

## 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정대용\*\*·김성훈\*\*\*·김기범\*\*\*\*·이상진\*\*\*\*\*

### 국 | 문 | 요 | 약

범죄의 국제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형화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세계 각국은 수사기관간의 직접공조 등 새로운 협력수사체제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절차가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되는지, 증거능력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례와 법률의 규정 및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국외 사례를 참조한 바, 이는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가능하며,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국제협력수사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조항의 단편적 개정이 아니라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증거수집 절차로 인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의 문제는 외국수사기관의 절차를 존중하되 중대한 위법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ISP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절차의 체계화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국내 민간 기업의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제기구 및 외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국제형사공조, 사이버범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형사증거법

\* 본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의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2015)」 중 저자가 참여한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실무에 관한 분석’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충북지방경찰청 경정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감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I. 서론

과학기술에 의한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는 세계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형사사법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성범죄<sup>1)</sup>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초국가적 정보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범죄의 국제화 현상을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요인이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에서 발달된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나라들을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공간에 있는 범죄자들과 손쉽게 상호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는 대표적인 국제성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sup>3)</sup>, 통화위조,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성범죄에서 범죄의 모의, 실행 등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은 이미 UN 결의안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1) 이진형, “한국의 국제성범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8, 7면. 국제성 범죄는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발생 등의 요소가 2개 이상의 주권국가와 관계되는 범죄로, 범죄의 예방 및 범인의 검거·소추·처벌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3조 제2항은 국제성 범죄의 요소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어떤 범죄가 한 나라 이상에서 자행된 경우, ②범죄는 한 나라에서 실행되었지만, 준비·계획·조종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substantial part)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③한 나라에서 실행되었지만 한 개 나라 이상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이 관여되었을 경우, ④한 나라에서 실행된 범죄가 다른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것이다.
- 2) 황문규,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 방향”, 경찰학연구 제28호, 2011, 106면.
- 3) 김한균,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성과”,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4호, 2015, 16면;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국제회의인 제13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에서 사이버범죄는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와 연관되면서 더욱 복잡한 범죄현상으로서 법집행기관의 대응역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4) UNODC,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2013, 183~184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평균적으로 30~70%, 많게는 80%가 국제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 요인 중의 하나로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 프록시 등 장소와 국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증가를 들고 있다.

2001년 유엔총회 결의안 55/63에서는 모든 관련된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수사 및 기소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고,<sup>5)</sup> 2013년 유엔정보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 A/68/98에서도 국가 간 사이버범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2013년 서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참가국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sup>7)</sup> 하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재의 법제는 그 절차와 방법에서 초국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최근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식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sup>8)</sup>

범죄의 수사에 있어 증거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함께 범죄의 수사에도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국제성 범죄는 인터넷에 대한 의존이 크므로 네트워크상의 증거 확보가 범죄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초기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며, 무결성·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증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취득한 디지털 증거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동일성·무결성의 입증절차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외국에서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기반한 국제협력수사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등 새로운 국제협력수사제도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

5) UN Resolution 55/63, 2001; "Law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ses of criminal mis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hould be coordinated among all concerned States".

6) UN Group of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68/98, 2013; "State should intensify cooperation against criminal or terrorist use of ICTs, harmonize legal approaches as appropriate, and strengthen practical collaboration between respective law enforcement and prosecutorial agencies."

7) 2013 Seoul Framework for and Commitment to Open and Secure Cyberspace 참조.

8) 외국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는 전국진,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논문 제22권 제2호, 2006, 19면; 이윤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효율적 증거능력 부여 및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28면; 조규철, "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및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4호, 2011, 273-303면 참조.

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협력 방식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국제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수사를 통한 디지털 증거 수집의 법적·절차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국제협력수사의 의의

### 1. 기존의 국제협력수사 제도

#### 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수사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한 국제형사사법공조이다. 동법에서는 이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협의, 광의, 최광의 3가지로 구분되며,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증인 및 감정인의 신문, 압수수색·검증, 소재추적, 문서송달, 정보제공 등을 의미하고, 광의의 것은 협의의 범위에 범죄인 인도가 추가된다. 그리고 최광의의 것은 광의의 범위에 형사소추의 기관과 외국 형사재판 판결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sup>9)</sup>

형사사법공조조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조약이 우선함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호주의를 표명하였다.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의 경우(동법 제5장)에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을 통해 요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는 원칙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는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sup>10)</sup>

9) 김찬규, “국제형사사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8, 12면.

10) 국가간 형사사법공조에서 요청서를 발송하고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뜻하며, 통상 조약

이 직접 접촉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중앙기관 간 직접 연락에 있어 ‘긴급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sup>11)</sup>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는 외교경로를 아예 배제하고 중앙기관간의 송부를 원칙으로, 긴급한 경우 사법 당국간의 직접 송부를 규정하고 있다.<sup>12)</sup>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스위스 등 국가는 외교경로가 아닌 특급배송편을 통해 중앙기관 간 직접 공조요청을 하고 있다.<sup>13)</sup>

## 나. 인터폴 공조

인터폴 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와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sup>14)</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에 의한 국제공조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회원국 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인터폴 현장과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성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sup>15)</sup> 인터폴 공조는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의 중앙기관과 동일하며,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에 설치)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의 중앙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관 등 각 수사기관의 요청을 취합한 후 각국 국가중앙사무국 간에 연결된 전용망(인터폴 24/7 네트워크)<sup>16)</sup>을 통해 피요청국에 전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중앙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반면 인터폴 공조는 국가중앙사무국을 중앙 단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폴 공조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두에 당사국의 중앙기관이 어디인지를 명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통상 법무부를 중앙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경찰청에서 중앙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2조 제3항,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3조 제4항. “중앙기관끼리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외교채널을 통한 수 있다(the Central Authorities shall communicate directly with one another, or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12)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제15조.

13) 법무부, 『형사사법공조실무』, 2013, 52면.

14) 경찰청 예규 제514호.

15) 경찰청,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05, 111면.

16) <http://www.interpol.int/INTERPOL-expertise/Data-exchange/I-24-7> 2016. 12. 22.

필요가 없고,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공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비해 장점이 있다.<sup>17)</sup>

## 2. 국제협력수사의 개념 확대

### 가. 기존 제도의 한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국제공조에 있어서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폴 공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법률상의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sup>18)</sup>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하는 방식으로 공신력이 높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 인터폴 공조는 전 세계 190개국에 가입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국제공조의 범위가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실의 확인 등에 한정되고, 압수수색·증거물 인도 등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네트워크와 통신을 통한 증거확보 방법에 대한 고려가 없어<sup>19)</sup>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 나. 새로운 국제협력수사 방식<sup>20)</sup>

#### 1)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

국제성 범죄가 테러와 사이버테러, 마약, 총기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고,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사기관 간의 직접적인 공조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7) 김재덕,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27권 제3호, 2011, 44면.

18) 김재덕, 앞의 논문, 45면.

19) 이윤제, 앞의 보고서, 2011, 28면.

20) 새로운 국제공조 수사의 방식은 수사기관 간의 직접 공조와 국제기구와의 공조 및 민간기업과의 공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각 수사협력 방식의 유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전현욱 등, 앞의 보고서, 137면 이하 참고

수사기관 간 직접 공조(이하, 수사기관 공조)란 각국의 수사기관이 외교경로나 법무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 대 경찰, 검찰 대 검찰 등 수사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결과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공조는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국제회의, 컨퍼런스, 공동수사(Joint Investigation),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기준 총 19개국<sup>21)</sup>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하여 통상적인 범죄정보의 교환, 수사공조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와는 사이버범죄 분야에 특화된 협력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는데, 2015년에 미국 FBI와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수사기관 공조에서는 자료와 정보의 교환만이 아니라 긴급 데이터 보존조치를 요청하거나, 해당국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디지털 증거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 2)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수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수사는 기존의 회원국 간 연락채널 개설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 등에 머물렀던 기존의 인터폴 공조와 달리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기구 내에 범죄수사 부서를 신설하거나 각국 수사기관들의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폴에서는 2013년도에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 산하에 디지털크라임센터(INTERPOL Digital Crime Center)와 같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수 국가의 참여하에 수사상황의 전파, 디지털 증거의 공유, 압수수색 및 체포작전 지원 등 공동수사 작전을 조율(coordinating)하고 있다.<sup>22)</sup> 유로폴에서도 2013년에 유럽사이버범죄센터(European Cyber Crime Center, EC3)를 신설하여 인터폴과 달리 독자적 또는 EU 소속 국가들과 공동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터폴과 유로폴은 회원국에 대한 국제공조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조지원 Task Force 격인 Cyber Fusion Center와 J-CAT을 운용 중

21) 경찰청, 『경찰백서』, 2014, 319면.

22) 단, 수사의 조율에 한하며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

에 있다.<sup>23)</sup> 또한 인터폴, 유로폴을 포함하여 총 13개국의 법집행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참여로 구성된 국제온라인아동음란물대응협의체(Virtual Global Taskforce, VGT)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공동수사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sup>24)</sup> 국제협력수사에 있어 국제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 구성과 수사 작전의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3)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증거수집

민간기업과 협력은 형사사법공조절차의 중앙기관(법무부)이나 법집행기관의 매개 없이 수사기관이 정보의 보관자인 민간기업으로부터 증거를 직접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 협력방식으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용의자 추적정보나 범죄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통신허가서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외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법집행기관 전용 포털사이트에 업로딩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더라도 민간기업은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만을 제공하고 있어 전자우편 등 콘텐츠 정보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고 있다.

## 다. 국제협력수사의 개념 확대 필요성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네트워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분야는 네트워크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효율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협력방식이 실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교경로를 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공조뿐만 아니라 수사의 신속성과 집

23) <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services-support/joint-cybercrime-action-taskforce> 2016년 12월 22일 확인.

24) <http://virtualglobaltaskforce.com/> 2016년 12월 22일 확인.

행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 방식을 수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 평의회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통해 일정부분 제도화하고 있고, 인터폴과 유로폴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개별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조수사 및 증거획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협력수사가 기존의 형사사법공조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간 사법관할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규정한 약속으로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공식화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협력수사의 원칙적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환경에서의 국제 협력은 각국의 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들의 개발을 통해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sup>25)</sup>

### Ⅲ. 국제협력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사례와 적법성

#### 1. 증거 수집 사례

##### 가. 중앙일보 해킹 사건

중앙일보 해킹사건은 2012년 6월 ‘IsOne’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공격자가 중앙일보의 홈페이지를 변조하고, 신문제작시스템에 침입하여 데이터를 삭제한 사건으로, 중앙일보의 기사 집배신 시스템(기사 작성·송출·교정 등을 위한 편집기)에 장애를 초래하였다.<sup>26)</sup> 당시 경찰은 신문제작시스템, 보안시스템 접속기록,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국내 경유지 서버를 분석하여 10여 개 국가에 있는 17대의 서버가 공격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당시 형사사법공조, 수사기관 공조, 인터폴 공조, 해외 주재관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증거

25) 정완,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형사정책연구, 2007. 6, 131면

26) 중앙일보 보도(2013.1.16.) <http://news.joins.com/article/10434634>

를 확보한 뒤 자료를 분석하여 공격의 근원지를 북한으로 특정하였다.<sup>27)</sup>

북한발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은 전 세계 70개국의 서버를 활용<sup>28)</sup>할 만큼 국제성을 띄고 있다. 위 사건에서 공격자는 2009년 7·7 디도스, 2011년 3·4 디도스,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국가의 다수 서버를 사용하여 추적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서버가 위치한 여러 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였고, 공조방식은 해당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연락 채널 보유 여부 및 유대관계 형성 정도, 해당 자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에 맞는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현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받은 것을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특송 우편으로 송부받거나 수사관을 현지로 파견하여 인계받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유럽A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구성된 경찰 핫라인을 통해 정보 교환을 거쳐, 데이터 보존조치 등 긴급 협력을 요청한 후, 먼저 검사 작성 형사사법공조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원본은 사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될 것임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하드디스크를 대사관을 통해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

#### 나. 캄보디아 ‘에이스스타(AceStar)’ 도박사이트 사건<sup>29)</sup>

피의자들은 2007년부터 5년간 약 80여명의 직원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캄보디아에 서버를 설치한 뒤, 7만 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규모는 3조 7천억원, 수익은 4,700억원이었다. 그 기간 중 도메인 25,000여개, 판돈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 1,000여개 이상, 사이트 운영서버 400여대 이상을 동원하여 수사당국의 단속과 차단을 회피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는 캄보디아와 수 년 동안 유지된 경찰 간 협력과 공조수사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경찰청에서 인터폴 인터넷 도박 대응 워킹그룹 회의(INTERPOL Project Aces Working Group Meeting)를 유

27) 경찰청 보도자료(2013. 1. 16.), “2012. 6월 중앙일보 해킹 근원지는 북한-4월경 부터 공격 준비, 10여개 국가 서버 경유하여 공격”.

28) 이승운, “사이버테러 대응 모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5, 35면

29) 경찰청 보도자료(2014. 11. 14.), “판돈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

치하고, 캄보디아 고위간부를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IP에 대해 인터폴 공조를 통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캄보디아 내 용의자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경찰청 인력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하드디스크, 휴대폰, USB 등에 저장된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배후 운영자, 핵심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양국 경찰기관 간의 직접 공조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현지경찰과 수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다만, 외국에서 범죄수사,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불가능하여, 압수수색은 현지 경찰이 집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었고 확보된 증거물은 현지 경찰로부터 인계받았다. 디지털 증거 복제 등 과정에서 현지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여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하였다. 확보한 하드디스크에서 선별된 고객명부, 사이버도금 환전액, 도박사이트 운영기록 등은 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 공조는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자료나 정보의 제공만이 아니라 증거물 인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수사기관 공조만으로도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능하였다.

#### 다. 페이스북 협박 사건 수사 사례

2012년 3월 주한미군이 타인 명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한국인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네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30)</sup> 당시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페이스북 접속기록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페이스북 법무 담당자는 우리나라 법원의 유효한 허가서가 있으면 자료 협조가 가능하다고 그 절차를 안내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발부한 통신허가서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페이스북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해당 계정의 국내 접속기록(IP) 140건을 회신 받아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찰청과 페이스북 법무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주고 받

30) SBS 언론보도(2012.7.11.), “미군, 20대 페이스북 여친 알몸 동영상 유포 협박”,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268593&plink=OLD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268593&plink=OLDURL)

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페이스북에서 만들어 놓은 법집행기관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원의 허가서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업로드하고, 페이스북에서 관련 자료를 해당 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다운받아서 확보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외국 ISP는 법원에 의한 적법한 승인이나 허가가 있었는지를 자료제공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영장 모두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나 미국 정부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부터 직접 사용자 정보를 회신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 2. 새로운 국제협력 수사의 적법성

### 가. 쟁점

국제협력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협력방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 공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폴 공조를 제외한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여기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새로운 협력수사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는 절차와 외국에 요청하는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 공조 등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방식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에 규정된 외교경로나 법무부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협력의 상대방인 해당국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 나. 관련 규정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제3장에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제11조~제22조)’, 제5장에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제29조~제32조)’를 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와 외국에 요청하는 경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 형사사법공조의 범위에서는 사람·물건의 수사, 증거수집과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인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 범위에서는 범죄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조를 제외한 수사기관 공조의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에 공조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이하 범명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말한다)상 임의수사(제199조 제1항)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나, 공조에 관한 것은 이 법에 따른다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규정(제38조의 제2항)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다만, 최근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제8조의2)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공조에 대한 일부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하지만, 그 활동의 범위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에 국한되어 있어서 증거의 수집·제공 등의 근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사법공조법 상 외교적 절차나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외국과 공조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 다. 관련 학설 및 판례

### 1) 긍정설

국내에서는 아직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허용여부에 관한 주장을 찾기 어렵다. 다만,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적법절차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태인(2014)은 “형사절차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기초한 형사절차규정으로서 적법절차관련 조항과 적법절차와 관련 없는 단순히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를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나, 후자를 위반하는 경우 절차의 하자로서 이를 보완함으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sup>32)</sup> 또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국제협력):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32) 하태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25(4), 2014, 297면

라도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사소한 절차위반의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기도 하다.<sup>33)</sup>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행정조직간의 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성격이 유사한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같은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 볼 것이다”라는 이유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sup>34)</sup>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은 의견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절차 위반은 행정절차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도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 현지에서 출장하여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수사기관(검찰 및 국정원)이 외국에서 행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sup>36)</sup>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 부정설

박원백(2006)은 유영일(1987)의 논문을 인용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조라 함은 법적 공조(legal assistant)를 말하는 것으로, 각국의 형사소송법은 국내 사건만을

3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관련한 학계의 견해에 대하여는 하태인, 앞의 논문, 284면 이하 참조

34)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95 전원재판부 [범죄인인도법제3조위헌소원]

35) 특히 해당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인도의 성격은 그 본질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나 형사소송이 아니고 외국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에 대하여 그 국가에서 소추, 재판,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넘겨주는 '법무행정절차'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6)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판결.

규율할 뿐이고 국외절차는 별도의 조약에 의해서 규율되며, 국내법인 형사소송법을 사법공조절차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sup>37)</sup>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 공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증거수집으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범죄인인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으로 “헌법의 국민보호원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한 내용인 범죄인 인도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 측면에서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서 중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원의 인도심사 결정에서는 범죄인(범죄인인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도대상범죄(동법 제2조 제3호,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과 판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국제협력을 통한 증거수집 절차 역시 형사소송절차의 일종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증거수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국외 사례 검토

일본은 국제수사공조법에서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경우의 수리와 실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반대로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sup>38)</sup> 대신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임의수사 원칙에서 찾고 있다. 이를 통해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외국의 증거에 대하여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어떤 기관을 통해 요청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행정 조직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배분, 사무분담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둘째,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절차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외국

37) 유영일,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14면; 박원백, “영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 검찰공무원 연구논문, 2006, 4면에서 재인용

38) 전국진, 앞의 논문, 19면.

으로부터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의 형사절차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sup>39)</sup>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법집행기관 간 공조요청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7조의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이 없는 경우의 사법공조 요청절차(Procedures pertaining to mutual assistance requests in the absence of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9항은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국의 사법기관(judicial authorities)이 피요청국의 사법기관에게 공조요청과 그에 관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0)</sup> 인터폴도 이 조항에서는 사법기관 간의 연락채널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27조 2항에서 형사사법공조를 담당할 기관에 중앙기관 또는 주무기관(authorities for responsible)이라고 적시하여 중앙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도 형사사법공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1)</sup>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규정한 제26조도 별도의 공조요청이 없더라도 법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sup>42)</sup>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정보와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국제이동에 대응하여 수사상의 장애를 해소할 목적에서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국제공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sup>43)</sup>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유럽평의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호주 등 일부 당사국은 형사사법공조(MLA)를 통해 수집된 것만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국가는 법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을 참조하며, 독일, 세르비아 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sup>44)</sup>

39) 전국진, 앞의 논문, 19면.

40) 김한균, 김성은, 이승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연구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 조약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연구보고서, 2009, 39면.

41) 실제로 일본의 경우 경찰청의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이 형사사법공조 요청 발송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2) 김한균, 김성은, 이승현, 앞의 보고서, 37면.

43) 이영준, 정완, 금봉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7면.

44) Council of Europe, T-CY assessment report: The mutual legal assistance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2014, 7면

In some Parties, only material received via MLA can be used as evidence in court (for example, in Australia). Others refer to the principle of the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court (Finland, Hungary, Slovakia) and in others it depends on the specific case (Germany, Serbia)

## 마. 소결 : 허용설

수사기관 공조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국민, 임의수사, 방법의 적정성,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과 연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 공조가 형사사법공조보다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45)</sup>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변화된 범죄환경에 대한 대응과 수사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공조가 외국 수사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자발적 협조라고 볼 때 이를 부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국제화된 수사 환경에서 국제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 협력이 아닌 장시간 소요되는 범죄정보 분석과 공동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다.<sup>46)</sup> 그렇다하여 변화하는 형사사법환경에서 관련된 행정조직간의 세부적인 업무절차의 위반까지 모두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이념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사법체계를 갖는 일본의 해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5) Council of Europe, T-CY assessment report: The mutual legal assistance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2014, 7면.

46)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3집, 한국법학회, 2009, 348면

## IV. 국제협력수사를 통한 증거수집 개선방안

### 1. 국제협력수사 제도의 개선

이메일 무역사기와 같은 국제사이버범죄 등 국제성 범죄는 장시간에 걸친 범죄정보 분석과 관련 여러 국가들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사기관 공조가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고, 다수의 국가들 상호간의 공조 경험이 누적되면서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 공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있는 인터폴 공조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범위, 협력대상 및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외에 공조 요청하는 경우에 국제공조 요청의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여, 필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소멸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보존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는 수사기관 공조에 대한 보충적 절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형사사법공조 절차는 수사기관 공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국 수사기관에서 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요구하는 경우<sup>47)</sup>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형사사법공조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작성하는 주체인 검사와 이를 신청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형화된 입력도구를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에 탑재하는 것도 필요하다.<sup>48)</sup>

47) 실제로 일본, 영국, 미국 수사기관 등은 디지털 증거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공조요청사항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발송을 요구하고 있다.

48) 이와 관련 경찰청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2015)에서 발표된 UNODC의 형사사법공조요청 입력 툴 개발 사업을 참고할 만하다. <https://www.unodc.org/mla/en/index.html>

## 2. 동일성·무결성의 입증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과 가변성 등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성·무결성의 입증이 중요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나 국가 간 조약은 사법공조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국가 간에 증거수집과 제공 그 자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조항은 없다.

우리 대법원은 소위 ‘일심회 사건’<sup>49)</sup>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후 소위 ‘왕재산 사건’<sup>50)</sup>에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저장매체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를 서명한 확인서면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원칙과 이를 증명하는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외국 수사기관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증거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는 각국마다 다르며 증거수집의 방법과 절차 역시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면 국제 협력 수사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sup>51)</sup> 또한, 외국 수사기관이 우리 수사기관과 같은 법적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sup>52)</sup>, 외국 수사기관의 위법절차가 그대로 우리 사법절차에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49)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50)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51) 조규철, 앞의 논문, 282면.

52)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도6548;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 외의 수사기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전문법칙의 적용과정에서 외국의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우리나라에서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을 뿐이지, 형사소송법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 조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제 공조에 있어 요청국과 피요청국 어느 한쪽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하고 형사사법공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sup>53)</sup> 따라서 외국의 수사기관이 자국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라면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획득 과정의 전체적 과정을 평가하여 증거수집의 절차가 국내법과 현저하게 위배되어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sup>54)</sup>

### 3. 전문법칙의 적용

디지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의 경험사실이 기록된 진술증거로서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sup>55)</sup> 대법원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및 ‘일심회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sup>56)</sup>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하여 수집된 진술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 거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제314조),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5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당 증거가 제315조 각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53)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다. 이윤제, 앞의 보고서, 2011, 43면.

54) 이와 같은 주장으로는 조규철, 앞의 논문, 282면.

55) 김윤섭, 박상용,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178면

5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외국에 거주하는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주로 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일본 세관의 감정서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거나<sup>57)</sup>, 미국의 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녹취서에 대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sup>58)</sup>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앞서 살펴본 과테말라 출장수사 사건에서 형사사법공조절차 없이 현지 출장의 방법으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사법공조절차나 과테말라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은 ‘수사의 비정형적 형태’로서 특신상태에 관한 증거가 없다”<sup>59)</sup>고 판단하는 등 외국에서 수집된 진술증거의 전문법칙 적용에 관하여 국제적 요소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집된 증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일반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sup>60)</sup>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단서에 규정된 특신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sup>61)</sup> 이는 매우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그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유형화하는 매우 곤란하다.<sup>62)</sup> 따라서 특신상태의 유무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63)</sup>

다만,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문건의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기기 및 작성과정 등 제반정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2항은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

5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5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59)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판결.

60) 외국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이윤제, 앞의 보고서, 7~27면 참조.

6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62) 한제희,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제21권, 2013, 556면

6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1233면

며, 이때 특신상태의 증명 요건은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의 진정성립의 증명 요건에 비해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외교적 노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국내 수집 증거와 동일하게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 예양, 국제화의 진전, 범죄의 국제화, 사법정의 실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증거수집과정의 어려움 등 실무적인 필요성만으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직접심리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전문법칙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 확대를 통한 증거능력의 인정보다는 수사기관이 특신상태를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디지털 증거 그 자체만이 아니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증거의 작성 및 압수수색에 관한 제반정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국제 수사 역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4. 해외 ISP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국제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ISP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본사가 미국에 소재함에 따라 우리 수사기관은 미국 소재 ISP와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긴급공개요청(Emergency Disclosure Request)을 통해 직접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로서 미국 ISP 본사 위치 등 외국의 주소를 기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sup>65)</sup>하고 있으나, 영장의 원본을

64) 이윤제, 앞의 보고서, 2011, 90면.

65)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한다. 그러나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페이스북 등 외국의 ISP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페이스북 등은 자국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warrant)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미국 ISP에 대한 자료 요청시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하고 있다.(2014

제시(제118조)할 수도 없고, 당사자 또는 책임자 참여 통지(제121조, 122조)와, 압수목록의 작성 및 교부(제129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외국으로 하는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위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 위반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 기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의 특정장소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인다. 법원의 관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소송행위는 관할의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법 제2조) 또한 외국의 ISP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주권이나 영토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고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절차 위반에 관하여 자료제공요청은 비록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강제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외국 ISP에게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ISP는 우리 법 규정이 아닌 자국의 법률<sup>66)</sup>과 자체 규정에 따라 외국(미국 입장에서) 법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자발적으로 회신하고 있다. 이는 국외에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우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의 압수수색영장은 외국 ISP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령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증거제공요청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발간한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매뉴얼』에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66) 전현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5), 171면 이하; 미국 연방저장통신법(Federal Stored Communication Act)은 전자통신 정보를 가입자정보(subscriber's information), 통신정보(transactional records), 내용정보(contents)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법(18 U.S. Code § 2702 C항 4조)에서 신체의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경우 또는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영장 등 법률적 절차 없이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사용자 정보(내용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기관(governmental entity)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는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5년 우리나라 경찰이 이메일을 이용한 폭과협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제시나 형사사범공조 절차 이행 없이 미국 ISP에게 가입자정보와 접속기록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데 당시 미국 ISP는 우리나라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해주는 법적 근거로 위 조항을 제시하였다.

압수수색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만으로 현재의 절차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절차 규정의 미비로 인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증거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상 기본권 보호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충분히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국 ISP는 자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등 각국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외국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화로 인하여 향후 국내 ISP에 대한 외국의 요청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자료의 제공만을 받는 것은 상호주의적 관점에 어긋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 ISP가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V. 결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제화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인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의 국제화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국제공조수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성 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 절실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수사기관 공조 등 새로운 국제협력 수사방식을 통하여 신속한 증거의 확보와 공동 수사체제를 확립시켜나가고 있고, 특히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이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기존의 논의 등을 살펴본 바, 새로운 국제 협력 수사 방식은 우리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허용가능하다 보인다. 따라서 국

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협력수사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법절차에 수용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조항의 단편적 개정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 관련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여러 법률을 검토하여 국제화된 환경에 적합한 협력수사제도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본권 보장, 수사권한의 남용통제, 수사의 필요성과 합목적성,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경우 무결성과 동일성을 보장하고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 수사기관과 민간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의 유지·발전과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날이 가속화하고 있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앞으로의 사법 환경 변화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화되는 환경에서 전통적인 이론과 절차만을 고집하거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의 실현과 수사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찰청, 『경찰백서』, 2014.
- , 『국제공조수사매뉴얼』, 2005.
- ,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2014.
- 김한균, 김성은, 이승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연구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연구보고서, 2009.
- 법무부, 『형사사법공조실무』, 201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 이운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효율적 증거능력 부여 및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 전현욱 등,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15.
- Council of Europe, *T-CY assessment report: The mutual legal assistance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2014.
- UNODC,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2013.

### 2. 논문

- 김윤섭, 박상용,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5.
- 김재덕, “인터넷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27권 제3호, 2011.
- 김찬규, “국제형사사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2008.
- 김한균, “제13차 유엔 범죄방지및형사사법총회의 형사정책적 의미와 성과”,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4호, 2015.

-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3집, 한국법학회, 2009.
- 박원백, “영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 검찰공무원 연구논문, 2006.
- 유영일,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승운, “사이버테러 대응 모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영준, 정완, 금봉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이진형, “한국의 국제성범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전국진,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해외연수검사논문 제22권 제2호, 2006.
- 정 완,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7.
- 조규철, “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의 증거수집 및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4호, 2011.
- 하태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 한제희,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제21호, 2013.
- 황문규,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 방향”, 경찰학연구 제28호, 2011.

## A Study on Collection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Obtained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Jeong, Dae-yong\* · Kim, Sung-hoon\*\*  
Kim, Gi-bum\*\*\* · Lee, Sang-jin\*\*\*\*

As globalization seriously aggravates transnationality of crime,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cooperation among national authorities to tackling this issue. In particular, worldwide network-facilitated cybercrime needs more intensified and swift cross border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as well as its transfer. However, existing formal process like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does not meet the demand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is era, who have then developed new system including direct LE to LE cooperation.

Here come various problems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cooperation; due to lack of proper legal ground, no one can affirm whether this process is acceptabl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how the court pro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the new system, etc.

This paper ascertains that direct LE to LE cooperation can be acceptable based on current legislation,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on foreign situations. It also argues that, despite its legal adequacy and necessity, additional legislation is required to institutionalize the new system.

For this, individual revision of relevant article is not sufficient;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is required for systemic improvement.

---

\* Superintendent,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 Senior Inspector, Cyber Bureau, Korean Police Agency

\*\*\*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s for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obtained overseas, due process of foreign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respected, and local authority shall review it case by case to see if there is serious illegality. When applying hearsay rule, scientific analysis, i.e. digital forensics, is required to be put in place more intensively. While we make appropriate process of requesting information to foreign ISPs, domestic ISPs, in consideration of reciprocity, is also allowed to provide information to foreign LE directly by establishing legal ground.

To this end, in-depth academic as well as practical discussion should be followed in the framework of basic rules embedded in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ct. International wi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oreign agencies is prior condition for further improvement.

❖ Keywords: Mutal Legal Assistance, Cybercrime,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Criminal Evidence Act

